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69
----------	-------

발의연월일 : 2026. 3. 20.

발 의 자 : 복기왕 · 안태준 · 김동아  
박용갑 · 최혁진 · 문진석  
김현정 · 이건태 · 김우영  
민병덕 · 정준호 · 전용기  
허종식 · 손명수 · 이연희  
박상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공사 입찰공고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

하는 동시에,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제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발주청이 입찰공고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가 입찰 참가 전에 해당 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공사기간이 산정되었는지 검토할 수 없어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공사 입찰 공고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가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등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 ③ (생   략) <u>&lt;신   설&gt;</u></p>	<p>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입찰 에 부치려는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 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 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 다. 다만, 입찰자가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등을 작성하 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사는 제외한다.</u></p>